

합천군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

제정 2021. 12. 7. 규정 제4호
개정 2023. 9. 22. 규정 제45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임·직원의 정서함양은 물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① 공단의 임·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, 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,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② 이 규정에서 “평균임금”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임·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.

제2장 안전과 보건

제3조(안전 및 보건관리) ① 공단은 임·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임·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건강진단) 임·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료시설)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3장 복리후생

제6조(후생기구 및 시설) 공단은 임·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구내식당 및 휴게소(자판기) 등 후생복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복리후생비 지급) ① 임·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급식보조비
2. 교통비
3. 직급보조비
4. 직책수행비

5. 명절휴가비

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휴직 및 정직 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기타 후생비) 공단은 임·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범위·기준 및 방법은 단규로 정한다.

제9조(선택적 복지제도 운영) 임·직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로 공단 운영 능력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·직원 개개인에게 복지예산을 배분하여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피복지급) 공단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착용기간

○ 동절기 : 11. 1 ~ 익년 3. 31

○ 하절기 : 4. 1 ~ 10. 31

2. 피복지급기준

○ 임·직원 : 동절기·하절기 상의 각 1착(2년사용)

○ 현장근로자 : 작업복 상·하의 각 1착 추가지급

제4장 재해보상

제11조(재해보상) ① 임·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공단이 이를 보상한다.

② 재해보상의 종류 및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2조(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)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상을 아니 하거나 차액에 한하여 보상한다.

제13조(보상의 경감) 임·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임·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.

제5장 체 육

제15조(직장체육진흥) 임·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6조(체육행사 등) ① 임·직원은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.

② 임·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취미클럽을 육성발전 시킴에 적극 지원한다.

제6장 보 칙

제17조(위임규정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[제45호, 2023. 9. 22.]

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제7조 관련) [개정 2023.9.22.]

복리후생비지급기준

구 분	지급대상	지급액	비 고
급식보조비	임직원	월 13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직급보조비	이사장	월 40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	3 급	월 250,000원	
	4 급	월 165,000원	
	5 급	월 155,000원	
	6·7 급	월 145,000원	
명절휴가비	임직원	기본급의 120%	매년 설과 추석에 속하는 달에 각 60%씩 지급
교통비	이사장 · 1급	월 20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	3 급	월 140,000원	
	4·5 급	월 130,000원	
	6급 이하	월 120,000원	
직책수행비	이사장	월 400,000원	매월 급여일 지급
	3 급	월 150,000원	
	4 급	월 100,000원	